

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일부 내용 제출 같음 및 검토 생략(안 제19조, 제46조, 제47조 개정)

-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검토기관이 심사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전달한 경우 해당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공정안전분야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같음
- 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검토기관의 심사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 필요
- 3)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검토를 생략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개정(안 별표4 개정)

1) 공정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기법들은 삭제·정비하여 불필요한 중복 요인 제거

다.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조항 이동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4조 개정)

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안 제14조, 제18조, 제31조,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1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로 갈음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심사한 공정안전보고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심사한 안전성향상계획

⑤ 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을 제출로 갈음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보고서 또는 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같은 사항은 검토를 생략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계획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19조제4항”을 각각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작성 항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로 갈음한다.

제4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받으려는 자는”을 “제4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을 제출로 갈음하려는 자가”로, “제출할 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으로, “없다는”을 “없다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항 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보고서 또는 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같은 사항은 검토를 생략한다. 이 경우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계획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과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 중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합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중”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누출 사고 발생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예비위험 분석기법과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5)다) 비고 제2호가목2)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따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별표 4 제2호가목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별표 11 제3호나목, 같은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결과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 구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결과 확인	종류 []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기관
	대상공장(공정)	심사통보일
	대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고, 해당 심사통보 후 변경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u>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u> 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 ----- ---- <u>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u> ----- ----- ----- ----- ----- <u>제출해야</u>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 <u>산업안전보건법</u> 」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해당 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 ----- ----- -- 「 <u>산업안전보건법</u> 」 제117조제2항-----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

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
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3. (현행과 같음)
- ② -----
-
-
- 통보해야 -----.
- ③ -----
-
-
-
- . -----
- 않는 -----
- 통
- 보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 ⑤ -----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2.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 ③ (생략)

<신설>

----- 제출
해야 -----. -----

-----.

1. 2. (현행과 같음)

⑥ -----

----- 않는 -

-----.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

<신 설>

④ (생 략)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당한다) 2부와 해당 법률에 따
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로 갈음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
하다고 심사한 공정안전보고
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
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심사한
안전성향상계획

⑤ 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을
제출로 갈음하려는 자가 제1항
에 따라 장외영향평가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또
는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서(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
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확인
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방법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통지해야 ---.

----- 제6항-----.

⑨ ----- 제8항까지-----.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보고서 또는 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같은 사항은 검토를 생략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계획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항

	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생 략)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 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 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 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에는 매 4년으로 한다.	② ----- ----- -- 제19조제6항----- ----- ----- ---. ----- ----- -----.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 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 년	1. ----- --- 제19조제6항----- ----- --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 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 년	2. ----- --- 제19조제6항----- ----- --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 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 2년	3. ----- --- 제19조제6항-----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 7. (생략)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 ③ (생략)

<신설>

면제)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

6. · 7. (현행과 같음)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② (생략)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계획(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신설>

로 같음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까지-----

-----.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보고서 또는 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같은 사항은 검토

④ 제3항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

를 생략한다. 이 경우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계획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하여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과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4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을 제출로 갈음하려는 자가 -----
----- 제출하는 경우에는
는 -----

-- 없다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

⑤ -----

-- . -----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u>제1항</u>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적고 수정·보완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u>제1항</u>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 <u>제2항</u>----- ----- ----. 1. ~ 3.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u>제2항</u>----- ----- ----. ⑦ (현행과 같음)
---	--